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3074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한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변론 종결**2021. 10. 28.

**판결 선고**2021. 12. 9.

## 주 문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9. 8. 14.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I[J생]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13,657,717원, 피고 C은 5,604,647원, 피고 D은 12,126,550원, 피고 E는 8,197,519원, 피고 F은 4,080,703원, 피고 G은 2,332,8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부터 2019. 8.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286,401,3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H을 상대로 '286,4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합2698호)를 제기하여 2020. 5.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H은 2019. 8. 14. 피고들 및 K, L, M과 사이에, 자신이 I과 사이에 체결된 종란 납품계약에 따라 2019. 7. 31. 당시 보유하고 있던 11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피고들 및 K, L, M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누어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에 한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의 목적물이 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금전채권을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에게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채무자인 I도 같은 날 채권양도승낙서를 통하여 H과 피고들 및 K, L, M 사이의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H은 무자력 상태에서 소속 직원인 피고들에게 I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H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H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H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I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금전지급청구

한편 I이 H의 경리직원이자 피고들의 대표인 피고 B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은 위 4,600만 원을 아래 표(이하 '금전지급청구 관련 원고 주장 요약 표'라 한다)와 같이 피고들이 양수한 각 채권액의 합계 636,900,000원 중 각자의 양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다.

|      |             |            |                                                 |
|------|-------------|------------|-------------------------------------------------|
| 피고 B | 189,100,000 | 13,657,717 | $= 46,000,000 \times 189,100,000 / 636,900,000$ |
| 피고 C | 77,600,000  | 5,604,647  | $= 46,000,000 \times 77,600,000 / 636,900,000$  |
| 피고 D | 167,900,000 | 12,126,550 | $= 46,000,000 \times 167,900,000 / 636,900,000$ |
| 피고 E | 113,500,000 | 8,197,519  | $= 46,000,000 \times 113,500,000 / 636,900,000$ |
| 피고 F | 56,500,000  | 4,080,703  | $= 46,000,000 \times 56,500,000 / 636,900,000$  |
| 피고 G | 32,300,000  | 2,332,862  | $= 46,000,000 \times 32,300,000 / 636,900,000$  |
| 합계   | 636,900,000 |            |                                                 |

그렇다면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직접 원고에게 각 변제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1), 또는2) ② 부도가 임박한 H이 피고들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3) [으로부터 각 변제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H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먼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2.

1.부터 2019. 8.까지 H에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도 286,401,3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H에 대한 위 운송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9. 8. 14.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4)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H은 보령시 N리 일대, 정읍시 이리 일대, 남원시 P리 일대에 농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H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 8.말부터 2020. 5.까지 15건 이상의 압류 내지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며,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에는 H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상실한 점, ② H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9. 8. 19. 부도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의 채무자인 I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앞서 피고들이 집에 찾아와 "Q(H의 대표이사)이

부도났다.", "이거 빨리 처리해주고 저걸 해줘야 사장님도 살고, 자기들도 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H이 위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9. 8. 14. 이후 H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H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이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느바, H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양수하였느바, 대물변제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의 판시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대물변제에 대해서도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일반기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에 의하여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의 판시사항 중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의거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H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들이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양수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채권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은 H의 직원들로서 H의 자력이나 경영 상황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피고 B는 H의 경리직원이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피고들이 찾아와 "Q이 부도났다.", "이거 빨리 처리해주고 저걸 해줘야 사장님도 살고, 자기들도 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승낙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H이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들과 통모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 등을 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 등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피고들이 H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각 금전채권액을 각각 상회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전부를 취소한다.

2) 한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I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피고 B가 I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의 변제 명목이었고 나머지 피고들의 대표로서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 B가 위 4,6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K, L, M을 대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I로부터 금전지급청구 관련 원고 주장 요약 표와 같이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상회복 방법은 양도계약이 취소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H에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I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I이 H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는 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더라도 I이 피고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어, 굳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I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승낙하는 취지의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한 것 외에 H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H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금전채권 가액에 상응하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설령 I, H, 피고들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위

채무인수계약으로 인하여 사해행위가 아닌 것이 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사실관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H에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I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4.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I으로부터 금전지급청구 관련 원고 주장 요약 표와 같이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판사성기권

판사김재현

판사박광선

별지

1) 이 부분 주장을 고려하면 원고는 앞서 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중 피고들이 I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한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그만큼의 채권액에 대해서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및 통지를 구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전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2) 원고는 위 ①과 ②를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주장하였으나 양자가 법률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선택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선택한다.

3) 원고 주장의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나누어 주장한 점, H이 피고들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한 점,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인 H이 직접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H을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H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선택한다.

4) 피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